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569

발의연월일: 2020. 9. 7.

발 의 자: 강기윤 • 윤영석 • 박성중

이명수 · 송언석 · 권명호

최형두・구자근・김희국

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스마트도시계획은 기존 도시의 도시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도시혁신을 통해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도시에 대한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반드시 수립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함

그러나 스마트시티가 국가전략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스마트도 시계획 수립이 활성화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됨.

따라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활성화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 흥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의무화,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계획 재정비 의무화, 광역도·자치구의 계획수립권한 부여, 비전문적 계획수립을 방지할 수 있도록 현재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활성화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이라고 하는 법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이를 5년마다 재정비하며, 광역도와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도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안 제8조제1항).
- 나. 도시·군기본계획에서 스마트도시계획 내용을 포함할 경우 스마트 도시계획 수립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던 것을 폐지하여 스마트도시 계획 수립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이라는 법의 취지와 전문 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된 내용을 삭제함(안 제8조제2항 삭제).

법률 제 호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수 있다"를 "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5년마다 관할 구역의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 중 "다만,"을 "또한"으로 한다.

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햀 혂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 |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 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관할 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 여야 한다.

1. ~ 10. (생 략)

②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구역 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 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 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수립된 도시・군기본계획 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스마트 도시계획의 내용이 반영되어

개 정 안

제8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시장 • 군 장 또는 군수는 그 관할 구역 | 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계획 을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역에서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관할 구역의 스마트도시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또한----

1. ~ 10. (현행과 같음)

<<u>삭 제></u>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스마트도 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